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임석규입니다.
- 2003년 10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 충청북도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충·남북, 대전 등 3개시·도의 협약에 의한 분담금으로 동 지역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지원해 오던 것을
 - 금강수계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2003년 1월 1일부터 지원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
- 검토결과를 말씀드리면
 - 동 조례는 2002년 7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강수계관리 및 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강수계관리기금에서 그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가 필요치 않아 이를 폐지하는 것으로 늦은감이 있으나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 동 조례 폐지 공포일 이전에 발생한 결산 잉여금의 처리와 3개시·도의 협약사항에 관한 그 효력의 존속여부, 향후 금강수계기금에서 지원되는 재원의 시·군별 배분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대청호특별대책지역환경기초시설운영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제시조례안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
 - 1. 체결 일시는
 - 2. 대상 시도는
 - * 청주시가 분담하는 이유는
 - 3. 동 조례 폐지후 이 협약의 효력은

- 그 동안 분담금의 징수 절차
- 댐 주변 시·군에 지원하는 배분 산정기준은

- 결산시점
- 전년도에 발생한 잉여금(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 금강수계관리기금이 언제부터 지원되었으며,
- 동 기금이 시군에 지원되는 절차는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자문위원은 몇 명이며,
우리도는 누구인가
-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실무위원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규정

[개정 2002.4.15 대통령령 제17577호]

제1조 (목적) 이 영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조정대상)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협의·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자문위원회) ①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대전광역시·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가 추천하는 각 광역시·도의 주민대표 1인, 시민사회단체대표 1인, 산업계대표 1인, 환경관련 전문가 1인으로 한다.

③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자문위원회의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 ①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금강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위원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금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안건
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금강환경관리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전주지방환경관리청장
2.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의 관련 국장
3. 대전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의 관련 국장

4. 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산업단지공단의 관련 상임이사

④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사무국) 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직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금강환경관리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관련 기관으로부터 파견된 공무원 및 직원
3. 금융 또는 회계관련 전문가 등 사무국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③ 제2항제1호의 직원은 사무국과 금강환경관리청의 직을 겸한다.

④ 사무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여론의 수집) 위원회는 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방송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등)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문을 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문위원회의 위원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사·연구를 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직원

3. 위원회에 출석하는 전문가

제11조 (운영계획)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7577호, 2002.4.15>

이 영은 200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